

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

「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」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
□ 신청사실

신 청 자		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신청일자		2024.1.11.
신청 내용	상 호	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	본 점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
	자본금	51.9억원
	신청취지	변경인가 신청
	신청내용	사업계획일정 변경
연락처		TEL 02-6958-2364 FAX 02-6958-2379

□ 의견제시 방법

- 상기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<우편으로 의견제출>

-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

부동산투자제도과 부동산투자회사 담당자 앞(우편번호 30103)
- 의견 제시기한 : 2024.1.16
- 기타
 - 공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(044-201-4812)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